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9월 8일,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4.)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의겸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새로운 수사절차 관련 의무 신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재정신청 관할법원 변경 등 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맞추어 다른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종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를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 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제5조(<u>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검사장</u>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	제5조(<u>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략)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생략)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

1.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소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 지방공소청장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set consisting of two parallel lines.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 to guide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

--

--

--

-- 지방

공소청장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이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② ----- ----- ----- <u>지방공소청장</u>----- ----- ----- ----- -----.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공소청장</u>----- ----- ----- ----- ----- ----- -----.
---	--